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전임교원 재임용, 승진 및 정년보장임용 지침

제정 2026. 3. 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및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첨단융합학부 전임교원의 재임용,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에 관한 절차와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임용

제1절 재임용

제2조(재임용 추천) 학부장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교원의 재임용을 총장에게 추천한다.

1. 재임용을 위한 서울대학교의 제 규정과 그 상위법령상의 적격 여부
2. 재임용후보자 평가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 라 한다.)의 평가 결과
3. 첨단융합학부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 결과

제3조(소위원회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대상자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1. 소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소위원회는 심사대상자 전공 관련 분야에 있는 첨단융합학부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교내 타 학과(부)의 전임교원을 포함할 수 있다. 이때 타 학과(부) 전임교원이 소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며, 첨단융합학부 협약에 의한 겸무 교원은 첨단융합학부 교원으로 간주한다.
3. 학부 인사위원 중 심사대상자 전공 관련 분야의 위원이 소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시행세칙」 제7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교원은 소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고, 심사위원회 구성 이후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교체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소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③ 제3조제1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연구실적물 심사) ① 심사대상 연구실적물 및 총괄연구업적의 범위, 인정점수는 전공분야와 관련되어야 하고, 다음 각 호를 충족시켜야 한다.

1. 서울대학교의 제 규정과 그 상위 법령에 규정된 요건
 2.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전임교원 신규채용 지침」 제4조제2호
- ② 심사대상 연구실적물 및 총괄연구업적의 범위는 심사대상자의 협약겸무기관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겸무기관의 동의를 얻어 조정할 수 있다.
-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실적물 평가를 위해 심사대상자의 직급 이상인 교원(타대학 전임교원을 포함한다)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학내인사 5명 이상, 외부인사 3명 이상을 학부장에게 추천하고, 학부장은 이 중 외부인사 2명 이상을 포함한 5명을 연구실적물 심사위원으로 임명·위촉한다.

제5조(심사 절차) ① 심사는 [별표 1]~[별표 5]에 정해진 바에 따라 교수업적평가를 통해 실시하며, [별표]에 따로 기재된 항목 이외에는 1차 평정은 소위원회에서, 2차 평정은 학부장이 실시한다.

- ② 연구업적 평가 시, 심사대상자의 협약겸무기관의 평가기준에 준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겸무기관의 동의를 얻어 조정할 수 있다.
- ③ 기관장 평가 및 가산점은 학부장이 부여한다.
-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 및 협약겸무기관의 의견서를 토대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학부장에게 제출하며, 그 외 추천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⑤ 학부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한 평가서, 협약겸무기관의 의견서 및 추천서 등 증빙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차 평정을 실시한 후 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
- ⑥ 인사위원회는 학부장이 제출한 평가서, 협약겸무기관의 의견서 및 추천서 등 증빙자료의 타당성을 심의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의 협약겸무기관으로부터 추가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절 승진임용

제6조(승진임용 추천) 학부장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교원의 승진임용을 총장에게 추천한다.

1. 승진임용을 위한 서울대학교의 제 규정과 그 상위법령상의 적격 여부
2. 소위원회의 평가 결과
3.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4. 전문가추천서 요건 충족 여부

제7조(소위원회 구성) 승진임용후보자 평가 소위원회 구성은 제3조를 준용한다.

제8조(연구실적물 심사) 승진임용후보자 연구실적물 심사에 관한 사항은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임용”을 “승진임용”으로 본다.

제9조(심사 절차) 승진임용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임용”을 “승진임용”으로 본다.

제10조(전문가추천서 요건) 심사대상자의 협약점무기관에 승진심사에 대한 전문가추천서 요건이 있는 경우 심사대상자는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경우 전문가추천서는 학부장이 소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추천서 요청 권한은 전공주임, 심사대상자 전공 관련 분야의 인사위원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 (특별승진임용) 학부장은 승진소요경력연수 및 승진임용기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조교수를 인사위원회를 거쳐 특별승진임용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특별승진임용을 하고자 하는 교원은 1회에 한정하여 임용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1. 연구업적이 탁월하여 학계 발전에 큰 공헌을 한 경우
2. 특별승진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본교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경우
3. 본교 교원으로 임용 이후 징계 사실이 없는 경우
4. 본교 교원으로 임용 이후 재임용 사실이 없는 경우

제3절 정년보장임용

제12조(정년보장임용 추천) 학부장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교원의 정년보장임용을 총장에게 추천한다.

1. 정년보장임용을 위한 서울대학교의 제 규정과 그 상위법령상의 적격 여부
2. 소위원회의 평가 결과
3.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4. 전문가추천서 요건 충족 여부

제13조(소위원회 구성) 정년보장임용후보자 평가 소위원회 구성은 제3조를 준용한다.

제14조(연구실적물 심사) 정년보장임용후보자 연구실적물 심사에 관한 사항은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임용”을 “정년보장임용”으로 본다.

제14조(심사 절차) 정년보장임용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

임용”을 “정년보장임용”으로 본다.

제15조(전문가추천서 요건) ① 학부장은 심사대상자 전공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외 최정상급 전문가 5명 이상(국외 전문가 2명 이상 포함)의 추천서를 받아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심사대상자의 협약겸무기관에 정년보장임용 심사에 대한 전문가 추천서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 요건 역시 충족해야 한다.

② 추천서 요청 권한은 전공주임, 심사대상자 전공 관련 분야의 인사위원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제16조(지침 개정) 이 지침을 개정할 때에는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제48조제2항에 따라 학부 인사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2026. 3. 20.>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학교원 (재임용·승진·정년보장)임용심사 평정 총괄표

첨단융합학부

대상자	소속 : 첨단융합학부 직급 : 성명 :	평정점			비고
구분	평가기준	평점	1차	2차	
(1) 교육활동 (40점)	(1) 책임시간	10			
	(2) 석·박사 학위 배출	10			
	(3) 강의평가	5			
	(4) 비교과 및 인턴십 교육	10			
	(5) 기타 교육활동	5			
	소계	40점			
(2) 연구활동 (40점)	(1) 연구실적물 (연구실적물 심사위원)	20			
	(2) 총괄연구업적	학부장	10		
		연구실적물 심사위원	5		
	(3) 그 밖의 연구활동	5			
소계	40점				
(3) 봉사활동 (10점)	(1) 교내활동	7			
	(2) 학회활동	2			
	(3) 정부부처 및 사회봉사활동	1			
	소계	10점			
(4) 기관장평가 (10점)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근무상황 및 근무자세, 법령위반 또는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을 종합평가	10			
	소계	10점			
(5) 가산점(5점 이내)					
합계					
종합의견	1차 평정자				
	2차 평정자				

2026. 00. 00.

소위원회 위원장 성 명 (인)

첨단융합학부장 성 명 (인)

교육활동 평가기준 및 평가표

첨단융합학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및 기준		평점	평정점			비고
				1차	2차	평균	
책임시간 (10점)	현직 재직기간 중 누적미달시간이 3시간 미만		10				「전임교원 책임시간 운영지침」 제3조에 따른 감면사항 제외
	현직 재직기간 중 중 누적미달시간이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8				
	현직 재직기간 중 누적미달시간이 6시간 이상		0-7				
학위배출 ¹⁾ (10점)	조교수 재임용 시 혹은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 시	석사 2명 이상 또는 박사 1명 이상 배출	10				현직 재직기간 중
		석사 1명 배출	8				
		학위배출이 없을 시 ²⁾	0-7				
	부교수 재임용 시 혹은 부교수에서 교수 승진 시 혹은 정년보장 임용 시	석사 4명 이상 또는 박사 2명 이상 배출	10				
		석사 2명 이상 또는 박사 1명 이상 배출	8				
		석사 1명 이하 배출 ²⁾	0-7				
강의평가 (5점)	강의평가 평균 평점 4.0 이상		5				현직 재직기간 중 (계절학기 제외)
	강의평가 평균 평점 3.5 이상 4.0 미만		4				
	강의평가 평균 평점 3.5 미만		0-3				
비교과 및 인턴십 교육 ³⁾ (10점)	책임 운영 및 참여 등 종합 평정		0-10				현직 재직기간 중
기타 교육활동 ⁴⁾ (5점)	신규교과개발, 교양과목강의, 계절학기 강의, 외국어진행강의, 책임시간초과강의, 대형강의 등		0-5				현직 재직기간 중
계							

1) 석박통합과정 3개 학기 초과 및 24학점 이상 이수 학생은 석사학위배출자로 계산한다. 또한 석사 2명 배출은 박사 1명 배출과 동일한 실적으로 계산한다.
 2) 본교 현직 재직기간 중의 대학원생 학위논문지도 중간심사와 논문심사위 참여 이력 등을 기반으로 종합적으로 평정하며, 계절학기 사항은 첨단융합학부 안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3) 해당 교원이 제출한 첨단융합학부 및 서울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비교과 및 인턴십 교육활동 관련 실적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평정한다.
 4) 해당 교원이 제출한 기타 교육활동 실적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평정한다.

[별표 3]

연구활동 평가기준 및 평가표

첨단융합학부

대 상 자	소속 : 첨단융합학부 직위 : 직명 : 성명 :		평정점			비고
	평가항목	평가내용 및 기준	평점	1차	2차	
연구실적물1) (20점)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의 우수성을 각 실적물 당 <u>매우 우수 (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 미흡(1)</u> 으로 평가한 후, 종합 점수에 4를 곱하여 평정점으로 계산함. (연구실적물 심사위원 평정)		0-20			
총괄연구업적 (15점)	총괄연구업적의 우수성 (학부장 평정)		0-10			
	총괄연구업적의 우수성 (연구실적 심사위원 평정)		0-5			
그 밖의 연구활동 (5점)	연구과제수행	5건 이상	3			
		2-4건	2			
		2건 미만	1			
	산학협력실적 및 특허(출원 및 등록) 등	1건 이상	2			
		1건 미만	1			
계						

1) 연구실적물 심사위원 평가 점수 5점, 심사위원 5명의 평가 점수 중 최고 및 최저등급(점수)의 평점 1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평가 점수를 평균한다.

[별표 4]

봉사활동 평가 기준 및 평가표

첨단융합학부

대상자	소속 : 첨단융합학부 직위 : 직명 : 성명 :		평정점			비 고	
	평가항목	평가내용 및 기준	평점	1차	2차		평균
교내활동 ¹⁾ (7점)	보직활동, 입시참여(입학사정관 및 입시면접위원), 학부행사봉사 등 종합평정		0-7				현직 재작기간 중
학회활동 (2점)	회장, 부회장, 간사장,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 편집간사, 총무간사, 간사 국외학술지의 편집위원		2				과총에 학술단체로 등록된 학회, 현직 재작기간 중
	학회의 회원		1				
정부부처 및 사회봉사 활동 (1점)	정부기관 위원회, 전공과 관련된 사회봉사 활동 (자문 포함)	1건 이상	1				
		1건 미만	0				
계							

1) 구체적인 사항은 첨단융합학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며, 해당 교원이 제출한 활동 실적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평정한다.

[별표 5]

기관장평가 기준 및 평가표

첨단융합학부

대 상 자	소속 : 첨단융합학부 직위 : 직명 : 성명 :		평정점	비고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및 기 준	평점		
교육 관계 법령 준수 및 그 밖에 교원으로서의 품위 등 (10점)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근무상황 및 근무자세, 법령위반 또는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을 종합 평가	10		
계				